

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1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 등의 자문, 심의, 조정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써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31조의2 개정
 - (개정 전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.
 - (개정 후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.
- 나. 정비대상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: 【붙임 4】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5. 9. 10. ~ 2025. 9. 30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소비자기본법”을 “「소비자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시의 의무)”를 “(시장의 책무)”로 하고, 내용 중 “시장은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”를 “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로, “동법 제6조”를 “같은 법 제6조”로, “긴급수급 조절 조치”를 “긴급수급조정조치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2조”를 “시장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2조”로,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등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한다”를 “등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31조의2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개최 할”을 “개최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31조 제6항”을 “제31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34조 중 “위원에 대하여”를 “위원에게”로, “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기획경제실
입	소상공인지원과장	김 정 삼
안	소비자경제팀장	황 유 경
자	담 당 자 (연 락 처)	손 혜 정 (481-2842)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생활물자에 대한 조치)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동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<u>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 조절 조치</u> 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생활물자에 대한 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----- ----- 같은 법 제6조----- --- 긴급수급조정조치----- -----.</p>
<p>제18조(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) ① 시장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는 등록소비자단체 등에게 <u>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8조(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) ① 시장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2조에 ----- ----- 예산의 범위에서 -----.</p>
<p>1. ~ 4.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<u>등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한 다.</u>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등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 다.</p>
<p>제31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로 한다.</u></p>	<p>제31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2030년 12월 31일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2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임시회를 <u>개최</u>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31조 제6항</u>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34조(실비보상) 위원회에 참석한 <u>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</u>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32조(회의) ① ----- -----<u>개최</u> <u>할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31조제6항</u>----- -----.</p> <p>제34조(실비보상) --- <u>위원에게</u>--- --- <u>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</u>----- ----- -----.</p>